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우정공무원교육원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우정사료관리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및 우정박물관 관련지침(규정) 예규 등록

1. 관 련

가. 우정박물관 운영지침

나. 우정사료관리심의회 규정

다.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
라. 교육운영과-2854(2016.9.26., 2016년도 강사수당 지급변경 안내)

2. 2016. 9.28. 시행된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로 우정공무원교육원 강사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정사료관리심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가. 개정항목 : 우정사료관리심의회 규정 제8조(권리와 의무) ②항

나. 개정내용

항 목	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8조 (권리와 의무) ②항	②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회의참가비 및 안전검토비를 강사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며 위촉위원의 구분은 <u>교수급(외부강사)</u> 으로 한다.	②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회의참가비 및 안전검토비를 강사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며 위촉위원의 구분은 <u>외부강사 공공(Ⅰ)</u> 으로 한다.	

※ 외부강사 공공(Ⅰ) 적용대상 : 4급 이상 공무원,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, 공직유관단체 임원, 국·공립대 교수, 국·공립학교 교장

다. 개정사유 : 강사수당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의 명확화

라. 시행일 : 2016.12.01

3. 또한 그동안 「우정사료관리심의회 규정」 및 「우정박물관운영지침」에 대해 자체 업무지침으로만 관리되었던 것을 우리원 예규에 포함시켜 반복적 행정사무에 대한 통일과 처리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- 붙임 1. 우정사료관리심의회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.
2. 우정사료관리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1부.
3. 우정사료관리심의회 규정(안) 1부.
4. 우정박물관운영지침 1부. 끝.

주무관

강리경

시설운영팀장

안승일

교육지원과장

박래구

원장

11/30
이영구

협조자

시행 교육지원과-6101 (2016.11.30.) 접수

☎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-14(유량동) /
전화 /전송 /

/ 공개